

진로 및 취업지원 규정

제정 2017년 8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재적생 및 졸업생의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운영

제3조(주관부서)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업무 주관 부서는 인재개발처 취업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취업지원 전문인력) ① 주관부서의 취업지원인력은 취업지원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대학은 이를 지원한다.

② 대학은 취업지원인력의 업무 지속성을 위해 노력한다.

③ 대학은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의 전문성 및 지속성 강화를 위해 취업전문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컨소시엄기관과의 협약 및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취업주관교수) 진로 및 취업 상담과 지원을 위해 취업주관교수를 둘 수 있다.

제6조(취업추천) 취업 추천대상자를 선발하여 취업추천을 할 수 있다.

제7조(취업지도) 학부(과)장 및 전공운영위원 등은 소속 학부(과, 전공)의 취업을 진흥하기 위해 학생취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8조(취업상담) 학부(과)장 및 전공운영위원 등은 소속 학부(과, 전공)의 학생의 취업을 위해 학생상담을 하여야 한다.

제9조(취업교육) 주관부서는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취업관련 자료제공) 주관부서는 단과대학, 학부(과, 전공) 또는 학생의 요청이 있을 때 취업정보자료를 제공한다.

제11조(취업박람회) 주관부서는 취업기회 확대 및 취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취업홍보) 주관부서는 취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수립하고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해 취업홍보 활동을 한다.

제13조(취업통계조사) ① 학부(과)장 및 전공운영위원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속 학부(과, 전공)의 학생취업 현황을 조사하여 소속대학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장은 학부(과, 전공)의 취업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각 대학의 취업조사 결과를 수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확정된 취업 자료를 대학 정보공시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제14조(환류) 주관부서는 진로 및 취업지원업무의 개선을 위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업무를 개선한다.

제3장 취업진흥위원회

제 15조(위원회의 목적) 취업관련 정책 수립 및, 취업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취업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제 16조(구성) (개정 2019. 03. 01)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인재개발처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처장, 각 단과대학장, 벤처대학원장, 창업지원단장, 대학일자리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창업교육센터장, Caritas상담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간사는 인재개발처 취업팀장으로 한다.

제 17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취업진흥정책 및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 ② 취업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
- ③ 취업관련 교원업적규정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취업 업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 18조(위원장의 권한) 위원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괄한다.
-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재적위원 중 호선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2017. 8. 28)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3. 0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학년도 부터 시행한다.